

國際刑事裁判所 통한 航空機테러범죄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Control of Aircraft Terrorism by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ICC規程 개정 위한 입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
(A Suggestion for the Amendment of ICC Statute)

김 만 호 (Prof. Kim, Man Ho)

공군사관학교 법정학과 교수

(department of law and political science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edemy)

- I. 서 론
- II. 항공기테러범죄의 법적성격
- III. ICC규정의 주요내용
- IV. ICC규정개정 위한 입법론적 고찰
- V. 결 론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legal control, by us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that will enter into force on 1st day of July 2002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6 of ICC statute, of aircraft terrorism, such as hijacking or sabotage, which may occur especially i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 ICC Statute prescribes that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shall be limited to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regulates the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crimes: (a) The crime of genocide; (b) Crimes against humanity; (c) War crimes; (d) The crime of aggression. However, the existing ICC Statute excludes (e) Crimes, established under or pursuant to the treaty, which was regulated by the ICC draft statute that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examined and submitted to the UN General Assembly in 1994, and which contained aircraft terrorism such as hijacking in the Hague Convention of 1970 or sabotage in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71 in Annex of ILC draf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character of aircraft terrorism as one of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suggests two kinds of legislative comments for the amendment of the ICC Statute including aircraft terrorism as an object of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for suppressing aircraft terrorism in advance and ensuring equitable penalty by ICC system.

I. 서론

전쟁범죄나 반인륜적 범죄 등 국제범죄들을 다룰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이하 “ICC” 라 약칭) 설립을 위한 로마規程”(이하 “ICC규정” 이라 약칭)이 1998년 7월 17일 로마외교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되었다. 同 회의에서의 표결 결과 영국, 독일, 일본, 러시아 등 120개국이 찬성한 반면,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 7개국이 반대하였고, 기타 터키, 수단 등 종교 내지 인종분규를 겪고 있는 21개국이 기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 가운데 ICC 창설을 위한 UN 다자간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반인륜적 범죄의 근절」이라는 인류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었다.¹⁾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뉘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와 도쿄 극동 군사재판소가 설치되어 이들 법정이 최초로 전쟁범죄에 대한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을 묻는 국제적 재판을 하였지만, 양 군사법정은 상설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닌 임시(ad hoc) 국제형사재판소로서 죄형법정주의, 재판소 구성 등 형사법상의 원칙에 문제가 있었던 국제재판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舊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자행된 집단살해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93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TY” 라 약칭)²⁾와 1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TR”이라 약칭)³⁾가 설치되어 잔학행위를 자행한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국제범죄의 형태로 심판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법정 역시 임시로 설립되어 특정지역의 특정상황에 한정된 국제범죄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한정된 목적을 가진 국제법정일 뿐 아니라, 그 설립이 UN헌장 제7장에 입각한 안보리의 권한행사 구조에 법적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자간협약에 법적 기초를 두고 있는 ICC설립과는 다르다.⁴⁾ 그리고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1) ICC규정은 6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UN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의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동규정 제126조 1항 참조).

2) ICTY설립에 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라 약칭) 결의 827 (1993), SC Res. 827 (1993), 25 May 1993, 32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203 (1993) 참조.

3) ICTR 설립에 관해서는 안보리 결의 955 (1994), SC Res. 955 (1994), 8 Nov. 1994, 33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598 (1994) 참조.

4) 유형석,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전쟁범죄,”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

“ICJ” 라 약칭)는 국가간의 분쟁을 다룰 뿐 개인범죄는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本稿에서는 ICC규정 제126조 1항에 따라⁵⁾ 2002년 7월 1일에 창설할 예정인 ICC를 통하여 항공범죄중 중대한 국제범죄성을 갖는 항공기납치(hijacking) 및 항공기폭파(sabotage) 범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항공기테러범죄의 법적성격을 규명하고, 현행 ICC규정상의 관찰대상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장차 ICC규정 개정을 통해 항공기테러범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론적 고찰을 함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항공기테러범죄의 법적성격

1. 항공기테러범죄의 개념

항공기테러범죄(aircraft terrorism)라 함은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항공관련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협약 및 각국의 관련 국내법규 가운데에서 특히 항공기납치행위⁶⁾ 및 항공기 폭파행위⁷⁾만을 뜻하며,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비행중인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극도로 危害하는 항공기 납치 및 점거행위, 납

회, 2001.10), p.114 참조.

5) Bosnia and Herzegovina를 포함한 10개국이 2002년 4월 11일 일시에 ICC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을 비준함으로써 당일 현재 서명국은 총 139개국, 비준국은 66개국이 되어 同규정 제126조 1항에 따라 2002년 7월 1일에 ICC규정이 정식 발효되고 이와 동시에 ICC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한국정부는 2000년 3월 8일 이를 서명하였으나 2002년 4월 현재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http://untreaty.un.org/ENGLISH/.../treaty10.asp> 참조).

6) 항공기납치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1970년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Hague협약(이하 “Hague협약” 이라 약칭) 제1조 1항 (a)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비행중에 있는 항공기에 탑승한 여하한 자가, 폭력 또는 그 위협에 의하거나 그 밖의 어떠한 다른 형태의 협박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항공기를 납치 또는 점거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기도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7) 항공기 사보타지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1971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Montreal협약(이하 “Montreal협약” 이라 약칭) 제1조 1항 (a)~(e)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떠한 자가 불법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비행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危害를 주는 경우” 를 의미한다.

치과정상의 살상 및 인질행위, 그리고 항공기 폭파행위 만을 제한적으로 뜻하는 최협의의 항공범죄를 의미한다.⁸⁾

2. 항공기테러범죄의 국제범죄성

가. 국제범죄의 개념

(1) 학설상의 개념

국제범죄의 개념에 관하여 학설상 크게 2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 하나는 국제범죄란 국제법이 정한 범죄라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국제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에 의해 심리·처벌되는 범죄라는 견해이다.⁹⁾

前者의 국제범죄는 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해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일련의 범죄를 말하는데, 이 경우 범죄인의 심리·처벌은 각국에 위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인의 처벌을 의무화하기 위해 관계국간에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미의 국제범죄는 이미 20세기 이전에 국제관습법이나 일반 국제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것들로서 예로부터 국제관습법상 범죄로 인정되어 온 것으로는 해적행위, 노예매매 및 노예수송, 마약매매, 海底電線의 파괴 및 손상 등이 있다.¹⁰⁾

이에 반해서 後者の 국제범죄는 단순히 국제법에서 범죄로 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와 같은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관에 의해 직접 심리·처벌되는, 즉 제재가 가해지는 것만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국제범죄로서는 침략전쟁, 집단살해죄(genocide), 인종격리죄(apartheid) 등이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다수 국가에 공통된 범익이라기 보다

8) 항공범죄의 개념에 관해서는 김만호, “항공범죄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p.6~12 참조.

9) 太壽堂鼎, “國際犯罪の概念と國際法の立場,” ツユリスト, No.720 (1980), p.67 참조.

10) 國際社會의 法益이라는 관념이 성숙되지 못한 시기에 국제관습법상 인정되어온 이러한 범죄들은 국제사회 그 자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기 보다는 대다수의 國家에 共通되는 法益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제성호, “항공기테러의 법적 규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51 참조).

는 국제사회 그 자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성격을 갖으므로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처벌되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이 실현될 때 그러한 범죄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범죄라고 할 수 있다.¹¹⁾

(2) 국제법위원회 초안상의 개념

UN총회의 보조기관인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이하 “ILC” 라 약칭)는 1955년 이래 국가책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 「국가책임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하였다.¹²⁾ ILC는 同초안 제19조에서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와 국제적 불법행위(international delict)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국제범죄는 국제의무 위반에서 결과하는 국제적 위법행위가 국제사회의 기본적 이익의 보호에 너무나도 긴요한 것이어서 그 위반이 국제사회 전체에 의해 범죄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³⁾ 이에 반해 국제적 불법행위는 국제범죄가 아닌 국제적 위법행위(international wrongful act)¹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¹⁵⁾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침략, 힘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설정 또는 유지, 노예제도, 집단살해 및 인종격리, 대기권 또는 해양에 대한 대량오염 등을 들고 있다.¹⁶⁾

(3) 私見 (국제범죄의 定義)

국제법상의 범죄 혹은 국제범죄라는 개념은 국제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국제사회 전체의 보편·타당한 공동체 이익(community interests) 내지 공통의 법익(common interests)을 상정하게 되면서 나온 개념이다.¹⁷⁾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범죄라 하는 개념은 아직 국제법상 유권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고 학자마다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는 다기적 개념인 바, 본고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제범죄의 개념을 광의, 협의, 최협의로

11) 太壽堂鼎, op.cit., p.72 참조.

12) 同초안은 제1편 국가책임의 源泉, 제2편 국가책임의 내용·형태 및 정도, 제3편 국가책임의 실현과 분쟁의 해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동초안 제19조 2항 참조.

14) 同條 4항 참조.

15) Yearbook of ILC, Vol.2 (1980), p.32.

16) 동초안 제19조 3항 (c) 참조.

17) P.C. Jessup, A Modern Law of Nations - An Introduction (N.Y.: Macmillan Company, 1952), pp.10~14 참조.

구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먼저 광의의 국제범죄라 함은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에 범죄의 구성요건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간에 공통되는 법익 또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국제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의 實行者, 實行地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가 일정한 국가의 기본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경우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에 의하여 재판관할권이 결정되는 바, 이러한 범죄의 예로는 스파이행위, 비행중인 항공기내에서의 폭력행위,¹⁸⁾ 公해상의 무선방송행위¹⁹⁾ 등을 들 수 있다.

협의의 국제범죄라 함은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체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국제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국제사회 전체 구성원의 법적확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나 모든 국가에게 당해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령 전쟁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국제관습법상 교전당사국에 전속되어 있으며, 항공기 하이재킹 또는 항공기 사보타지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협약상 체약국간에 관할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²⁰⁾

최협의의 국제범죄라 함은 국제관습법 또는 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체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제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국제사회 전체 구성원의 법적확신이 존재하고 모든 국가에게 당해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최협의의 국제범죄로서 이견이 없는 것은 해적(piracy)의 경우이다. 해적은 「인류일반의 적」(hostis humanis generis)으로 간주되어 모든 국가는 공해상의 해적선박, 해적항공기에 대하여 나포, 체포 또는 압류하

18) 비행중인 항공기내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Tokyo협약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동협약 제2장 [재판관할권]에서는 항공기 등록국, 가해자 국적국 또는 常仕國, 피해자 국적국 또는 상주국에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19) 공해상의 무허가방송에 대해서는 UN해양법협약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동협약 제109조 3항에서는 선박의 기국, 설비의 등록국 또는 실행자의 국적국, 수신국, 混信의 피해국에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20) Hague협약 제4조 및 Montreal협약 제5조 참조; 이와 같은 항공범죄는 범죄인의 신병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체약국이 기소 및 처벌에 관한 관할권의 결정에 있어서 항공기 등록국, 착륙국 기타의 관계국보다 우월적 입장에 있다는 의미에서 보편주의의 전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한기, 新稿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2), p.308 참조).

며 나아가 기소 및 처벌할 수도 있다.²¹⁾

나. 항공기테러범죄의 국제범죄성 문제

항공범죄 가운데 특히 항공기테러범죄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 및 국제항공 교통질서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바, 이러한 항공기테러행위는 과연 국제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UN의 태도

1969년과 1970년에 UN총회에서는 항공기납치를 해적행위와 동일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가에 관해 토의하였는데 여기에서 일부 국가들은 항공기납치를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라고 주장하였고 특히 네덜란드는 항공기납치에 관한 처리관행에 따르면 범죄의 법적성질에 관한 한 공해상의 해적행위가 유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²⁾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항공기납치를 국제범죄로 선언할 경우 UN회원국으로부터 항공기납치범에게 정치적 비호권을 부여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주권)를 박탈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UN결의는 항공기납치를 국제범죄로 선언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다.²³⁾

(2) 학계의 대립

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입법론상 내지 항공기테러의 규제를 위한 협약의 개정론의 입장에서 항공기테러범죄가 국제범죄²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행법상 국제범죄라고 단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부정적 입장이 다수설이다.²⁵⁾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다수설의 입장을 반박하는 여러

21) 公海조약 제19조, UN해양법협약 제105조 참조.

22) UN Doc. A/7656, 6 Oct. 1969 참조.

23) Narinder Aggarwala, "Political Aspects of Hijacking," *International Conciliation*, No.585 (1971.11), pp.17~18 참조.

24) Bassiouni교수는 국제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국제범죄로 22종의 범죄를 들고 있으며 그 중에 "항공기납치 및 파괴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M. Cherif Bassiouni and Christopher L. Blakesly,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the New International World Order,"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25, No.2 (1992), p.168 참조).

가지 논거를 제시하면서²⁶⁾ 항공기테러범죄가 국제범죄로 규제되어야 할 충분한 논리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⁷⁾

(3) 소결

대다수 국가들은 反하이재킹 조치에 대해서는 지지하면서도 자국의 주권행사가 제약받을 것을 우려하여 항공기테러범죄를 국제범죄로 선언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도 국제연합은 항공기 테러범죄를 국제범죄로 선언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학계의 입장에서도 국제테러범죄인 항공기 테러범죄에 대하여 현행 항공범죄 관련의 諸협약상의 입법과정이나 조문해석을 통해 볼 때 이를 국제범죄라고 단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국제사회 구성원 전체가 항공기테러행위에 대하여 국제범죄라는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테러범죄는 인류전체의 공동의 법익을 침해하는 국제적인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국 9·11 항공기테러범죄에서 보았듯이 범행 자체의 엄청난 파괴성, 무고성, 잔혹성, 위험성 등으로부터 국제범죄로서의 보편적 성질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 항공기 테러범죄에 관한 국제적인 새로운 입법론에 있어서는 항공기테러범죄의 법적 성격을 적어도 협의의 국제범죄라고 보는 법적 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5) Gary N. Horlick, "The Developing Law of Air Hijacking,"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12 (1971), p.63.; S.C. Chaturvedi, "Hijacking and the Law,"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1 (1971), p.92.

26) 항공기테러범죄에 대한 국제범죄성을 긍정하는 상세한 논거에 대해서는 김만호, 전제논문, pp.24~25 참조.

27) N.D. Joyner는 항공기납치의 국제범죄성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며(Nancy Douglas Joyner, *Aerial Hijacking as an International Crime* (Dobbs Ferry, N.Y.: Oceana Publications, 1974), p.230 참조), Narinder Aggarwala, Gerald F. Fitzgerald 등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III. ICC규정의 주요내용

1. ICC규정 체계

1998년 7월 17일 로마외교회의에서 채택된 현행 ICC규정은 전문 외에 총 13부 128개 조문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1) 동 재판소의 설립, 2) 재판관할권, 3) 형법의 일반원칙, 4) 재판소의 구성 및 행정, 5) 수사 및 기소, 6) 재판, 7) 형벌, 8) 상소 및 재심, 9) 국제협력 및 사법공조, 10) 집행, 11) 당사국 총회, 12) 재정, 13) 최종조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2. ICC의 법적지위

국제형사재판소는 네덜란드의 헤이그를 소재지²⁸⁾로 하는 상설적인 기관으로서 ICC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관심대상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한다.²⁹⁾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한 특별협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영역에서 그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³⁰⁾

3. 관할대상범죄의 유형 및 특색

ICC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갖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재판소의 관할대상에 속하는 범죄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그리고 침략범죄 등 네가지 범죄유형이다.

이러한 재판소 관할대상 범죄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색이 있다. 우선 이들 네가지 유형의 핵심범죄는 국가법익의 침해 여부를 묻지 않고 국제사회전체의 법익침해로 간주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핵심범죄는 소위 전시에 한하

28) ICC규정 제3조 1항 참조.

29) 同규정 제1조 참조.

30) 동규정 제4조 참조.

지 않고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평시 혹은 비국제적 무력분쟁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³¹⁾ 마지막으로 이들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³²⁾ 등이다.

4. 범죄구성요건

ICC규정 제2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소의 관할대상이 되는 4가지 유형의 범죄에 관한 정의 및 그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가. 집단살해죄³³⁾

집단살해죄라 함은 민족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 (i)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 (ii)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危害를 야기시키는 것
- (iii)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 조건을 집단에게 고의적으로 가하는 것
- (iv) 집단의 아동을 강제적으로 타 집단에 이동시키는 것

나. 인도에 반하는 죄³⁴⁾

인도에 반하는 죄라 함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을 인지하고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i) 살해
- (ii) 절멸(Extermination)
- (iii) 노예화(Enslavement)
- (iv)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적 이동
- (v) 국제법의 근본규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기타 신체적 자유의 중대한 박

31) 유형석, 전개논문, p.116 참조

32) ICC규정 제29조 참조.

33) 동규정 제6조 참조; 동조문은 집단살해방지협약(이하 “Genocide 협약” 이라 약칭) 제2조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34) 동규정 제7조 참조.

탈

(vi) 고문

(vii)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불임, 또는 다른 형태의 이에 상당하는 중대한 성폭력

(viii)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 또는 재판소 관할권내의 어떠한 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 인종적, 민족적, 종족적, 문화적,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性(gender),³⁵⁾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동일시되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해 가해진 박해

(ix) 사람들의 강제실종

(x) 인종격리죄(The crime of apartheid)

(xi) 의도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대해 중대한 고통 또는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인도적 행위

다. 전쟁범죄³⁶⁾

재판소는 전쟁범죄에 관하여, 특히 그러한 범죄가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광범위한 수행의 일부로서 저질러진 경우, 관할권을 가지며, 이 규정의 목적상 전쟁범죄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i)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관련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고의적인 살해

②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한 비인도적인 대우

③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큰 고통이나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는 것

④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도용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이유 없이 행해진 것

⑤ 포로 또는 달리 보호되는 자를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것³⁷⁾

35) 동규정 제7조 3항 : “이 규정의 목적상, “성”이라는 용어는 사회속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가지 성을 가리키고 있다. “성”이라는 용어는 이와 다른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지 아니한다.”

36) 동규정 제8조 참조.

(ii) 국제법의 확립된 체제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시 적용할 수 있는 법과 관습에 대한 다른 중대한 위반, 즉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민간인 주민 전체에 대하여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개별 민간인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

② 민간인의 물건, 즉 군사적 목표가 아닌 물건에 의도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

③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인도적인 원조나 평화유지임무와 관련된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또는 차량이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또는 민간인의 물건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그것들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³⁷⁾

(iii)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 협약에 공통된 제3조의 중대한 위반, 즉 무기를 버린 군대의 구성원과 질병, 부상, 억류 또는 기타 사유로 전투외에 놓여진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신체의 절단, 학대 및 고문

②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유린, 특히 모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

③ 인질로 잡는 일

④ 정규로 구성된 법원에 의한, 일반적으로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사전적 재판없이 행하여진 형의 선고 및 형의 집행

(iv) 상기 (iii)항은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v) 국제법의 확립된 체제내에서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시 적용할 수 있는 법과 관습에 대한 다른 중대한 위반, 즉 다음의 행위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7) 그의 ⑥~⑧호는 동규정 제8조 2항 (a) (vi) 이하 참조.

38) 그의 ④~⑥호는 동규정 제8조 2항 (b) (iv) 이하 참조.

① 민간인 주민 전체에 대하여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한 개별 민간인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

② 국제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건물, 물체, 의무부대와 수송수단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³⁹⁾

(vi) 상기 (v)항은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에 적용되며, 따라서 폭동,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상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기 (v)항은 정부당국과 조직된 무장집단간 또는 그러한 무장집단간에 장기간의 무력충돌이 존재할 때, 그 국가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라. 침략범죄

침략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ICC규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⁴⁰⁾ 다만 동규정 제5조 제2항에서 재판소는 침략범죄를 정의하고 재판소가 이 범죄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조건을 정하는 조항이 제121조(개정) 및 제123조(규정의 검토)에 따라 채택되는 경우,⁴¹⁾ 이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항은 국제연합헌장의 관련규정과 양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침략범죄의 정의 또는 이에 따른 침략의 존부에 대한 ICC의 사법적 판단은 독립적인가 아니면 UN헌장 제39조에 따른 안보리의 최종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⁴²⁾ 적어도 재판소는 UN헌장 제39조에 규정하고 있는 침략의 존부에 대해 최종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는 안보리의 권한을 저해하는 형태로 침략범죄를 정의해서는 안될 것이다.⁴³⁾

39) 그의 ③~⑫호는 동규정 제8조 2항 (e) (iii) 이하 참조.

40) ICC 규정 채택과정에서 침략범죄에 대한 정의문제는 ‘열거적 정의’를 선호하는 아랍국가들과 ‘일반적 정의’를 선호하는 서방국가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결국 규정 채택시까지도 합의점 도달에 실패하였다(유형석, 전제논문, p.118 참조).

41) ICC규정 제121조 1항에서는 규정 발효후 7년이 경과하면 동규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2) 침략범죄를 관할대상 범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문제 특히 침략의 개념 정의와 침략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의 안보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심하였다(유형석, 전제논문, p.117 참조).

43) ICC규정 채택 후 UN은 ICC 설립준비위원회를 연속 개최하여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

5. 관할권 행사요건

가. 관할권의 수락

현행 ICC규정은 ICC가 국가의 동의에 의하여 창설되는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핵심범죄와 ICC간에 관할권적 관련성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를 국가동의에서 구하고 있는 바, 동규정 제12조 1항에서는 “이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동규정 제5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ICC규정의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ICC 관할대상이 되는 범죄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국가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ICC의 재판관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동적 관할권(automatic jurisdiction)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ILC초안이 원칙적으로 국가동의에 기초한 관할권의 선택적 수락(opt-in)⁴⁴⁾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⁴⁵⁾

나. 관할권의 행사요건

(1) 당사국에 의한 회부 또는 검사 직권에 의한 수사 개시의 경우

동규정 제5조(관할대상 범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행하여졌다고 보이는 사태가 제14조(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ICC 검사에게 회부되었거나⁴⁶⁾ ICC 검사가 독자적으로 그러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⁴⁷⁾ ICC는 범죄발생지국⁴⁸⁾ 또는 피고인

한 후속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현황: 로마회의 이후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제21호 (대한적십자사, 2001), p.46 참조).

44) ILC초안은 제21조에서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는 고유관할권(inherent jurisdiction)제도를, 제22조에서 나머지 4개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동의(state consent)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는 바, 동초안은 ICC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원칙적으로 당사국의 별도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었다.

45) 최태현, “국제인도법 위반법 처벌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확립: ICC규정을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제19호 (대한적십자사, 1999), p.178 참조.

46) 동규정 제13조 (a) 참조.

47) 동조 (c) 참조.

48) 범죄발생지국이라 함은 “당해 행위가 발생한 영역의 국가, 또는 범죄가 선박이나 항공기

국적국이 동규정의 당사국일 때,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이 동규정의 비당사국인 경우에는 제12조 3항⁴⁹⁾에 따라 ICC의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⁵⁰⁾

(2) UN 안보리에 의하여 회부된 경우

동규정 제5조(관할대상 범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범죄가 행하여졌다고 보이는 사태가 국제연합헌장 제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ICC 검사에게 회부된 경우에는⁵¹⁾ ICC는 마치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제도를 채택한 것처럼 上記의 범죄발생지국 또는 피고인 국적국의 동의없이 직접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⁵²⁾

6. 제소의 주체

여기서의 제소(complaint)라 함은 하나 이상의 ICC 관할대상범죄가 행하여졌다고 보이는 사안(matter) 또는 사태(situation)에 대한 ICC에의 회부(referring)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제소의 주체로 동규정 제13조에서는 규정당사국, 유엔안보리, ICC검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동규정 제5조에 규정된 핵심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그러한 범죄가 행하여졌다고 보이는 사태가 제14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검사에게 회부된 경우

(i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그러한 범죄가 행하여졌다고 보이는 사태가 국제

안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국”을 의미한다(동규정 제12조 2항 (a) 참조).

49) 동규정 제12조 2항에 따라 ICC규정의 비당사국의 수락이 요구되는 경우, 그 국가는 서기국(Registrar)에 제출되는 선언(declaration)에 의하여 당해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수락할 수 있다(동조 3항 참조).

50) 동규정 제12조 2항, 3항 참조.

51) 동규정 제13조 (b) 참조.

52) 동규정 제12조 2항, 제13조 (b) 참조; 이 경우 ICC는 비당사국의 국민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는 조약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안보리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제소하는 침략범죄는 어느 국가나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ICC가 비당사국의 동의없이 그 국민을 처벌하더라도 비당사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연합헌장 제7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검사에게 회부된 경우, 또는

(iii) 검사가 제15조에 따라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

7. 제소의 객체

ICC규정 제26조에서 재판소는 범행혐의시에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25조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규정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형사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³⁾

(i) 단독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만, 그 다른 사람이 형사책임을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ii) 그 범죄의 실행을 명령, 권유 또는 유도하여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거나 착수된 경우

(iii) 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의 수단 제공을 포함하여 범죄의 실행 또는 그 실행의 착수를 방조, 교사 또는 달리 조력한 경우

(iv) 공동의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집단에 의한 그 범죄의 실행 또는 그 실행의 착수에 기타 방식으로 기여한 경우, 그러한 기여는 의도적이어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것이어야 한다.

① 그 집단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목적이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의 실행을 포함하는 경우, 그 집단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 또는

② 그 집단이 그 범죄를 저지르려 하는 의도를 아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v) 집단살해죄와 관련하여, 집단살해를 저지르도록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타인을 선동한 경우

(vi) 실질적인 조치로써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행위를 취하여 그 범죄의 실행을 기도하였으나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상황에 의하여 범죄가 완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범행의 노력을 포기하거나 또는 달리 범죄의 완성을

53)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이 규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법상의 국가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ICC규정 제25조 제4항).

방지한 자는, 그가 범죄 목적을 완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였다면, 그 범죄미수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IV. ICC규정개정 위한 입법론적 고찰

1. 국제법위원회 규정초안

국제법위원회(ILC)는 1989년 UN총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1990년 제42차 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993년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초안을 완성하여 1994년 UN총회 제46차 회기에 제출하였다.

ICC 설립에 관한 ILC 규정초안은 전문 외에 총 8부 60개 조문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는 1) 동 재판소의 설립, 2) 재판소의 구성 및 행정, 3) 재판관할권, 4) 수사 및 기소, 5) 재판, 6) 상소 및 재심, 7) 국제협력 및 사법공조, 8) 집행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⁵⁴⁾

특히 ILC 규정초안 제20조에서는 ICC가 재판관할권을 갖는 범죄의 유형으로서 ① 집단살해죄, ② 침략범죄, ③ 전쟁범죄, ④ 인도범죄, 그리고 ⑤ 조약상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조약상의 범죄」라 함은 “부속서에 열거된 조약규정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서 그 행위가 국제적 관심을 가지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⁵⁵⁾

이에 따라 동 초안 부속서에서는 ① 1949년 Geneva諸협약상의 중대한 위반, ② 1970년 Hague협약상의 항공기 불법납치행위, ③ 1971년 Montreal협약상의 항공기 테러행위, ④ 1973년 Apartheid협약상의 범죄, ⑤ 1973년 국제적 보호인물에 관한 협약상의 범죄, ⑥ 1979년 인질에 관한 협약상의 범죄, ⑦ 1984년 고문에 관한 협약상의 범죄, ⑧ 1988년 항해(maritime navigation)방해에 관한 협약상의 범죄, ⑨ 1988년 마약밀매에 관한 협약상의 범죄 등 9개 유

54) 정용태·류재형 共著, 국제법학 (대왕사, 1997), p.824 참조.

55) ICC 규정초안 제20조 (e)항 참조.

형의 조약상의 범죄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⁵⁶⁾

2. ICC규정개정의 필요성

오늘날 항공기 테러범죄를 국제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약으로 Hague협약과 Montreal협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협약들은 항공기테러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행사에 있어서 특정조건(항공기 등록국, 착륙국, 범인 소재지국, 범죄행위지국 등)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범죄에 대한 「이해관계의 소재」를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테러범에 대한 소추 및 처벌에 있어서도 재판관할권이 있는 각국의 국내법에 일임함으로써 기소 또는 형량이나 형집행에 있어서도 불완전한 측면이 많고 이에 따라 국제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국제법위원회(ILC)에서는 항공기테러범죄가 전 인류에 대해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중대한 국제적 범죄임을 고려하여 이같은 범죄를 방지하고 항공기테러범들에 대한 일률적인 소추 및 처벌을 위하여 ICC규정초안에 항공기 하이재킹 및 항공기 사보타지 범죄를 「조약상의 범죄」에 포함시켜 ICC를 통해 이를 국제법적으로 규제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ICC 설립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ICC에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범죄 유형중 「조약상의 범죄」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ICC규정 자체의 채택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이에 따라 ICC 창설이 지연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1998년 7월 17일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된 UN외교전권대표회의에서는 국제법위원회에서 작성한 ICC 규정초안상의 5개 관할대상 범죄중 「조약상의 범죄」를 제외한 4개의 핵심 관할대상 범죄를 중심으로 한 현행 ICC규정을 서둘러 채택하였던 것이다.⁵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11 미국 항공기테러참사에서 보았듯이 항공기 테러범죄는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56) ICC 규정초안 Annex (Crimes pursuant to Treaties) 1~9항 참조.

57) Mahnouch H. Arsanjani,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9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2 (1999), p.22 참조.

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안보체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국제적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테러범죄를 협의의 국제범죄로 인정할 수 있는 국제적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ICC규정 제121조에 따르면 동규정이 정식 발효된 후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동규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ICC가 정식으로 창설되어 그 운영이 정착된 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항공기테러범죄를 ICC 관할대상 범죄에 포함시켜 ICC에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항공기테러범죄를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범에 대해서는 형평성있게 소추 및 처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ICC규정의 개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론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입법론적 고찰

항공기테러범죄를 ICC 관할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론으로서는 첫째, ICC 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개의 핵심 관할대상 범죄 이외에 별도의 핵심 범죄유형으로 항공기테러범죄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고, 둘째는 현행 反인도범죄의 유형들 가운데에 항공기테러범죄를 새로 추가하는 방안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가. 별도의 핵심 범죄유형으로 신설하는 방안

먼저 항공기테러범죄를 ICC 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 관할대상 범죄이외에 별도의 핵심 범죄유형으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현행 규정상의 핵심 관할대상 범죄들은 대체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하고자 하는 항공기테러범죄 또한 다른 핵심범죄 유형들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행의 항공기테러범죄에 관한 국제협약인 Hague협약과 Montreal협약에 기초하여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설하고자 하는 관할대상 범죄의 유형은 「항공기테러범죄」로 하고, 그 개념은 “국내 및 국제 민간항공기 여부를 불문하고⁵⁸⁾ 비행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과정에서 탑승자를 살상하거나 비행중인 항공기를 폭파하는 제반 행위”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항공기테러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은 “불법적이고 고의적으로 행해진 다음의 행위, 즉 i) 비행중인 항공기를 납치 또는 점거하는 행위, ii) 비행중인 항공기를 납치 또는 점거하는 과정에서 탑승자를 살상 또는 인질로 삼는 행위, iii) 비행중인 항공기를 파괴 또는 손상하여 비행안전에 危害를 주는 행위, iv) 비행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危害를 주기 위하여 관련 항공시설을 파괴 또는 손상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v) 이러한 행위의 미수 및 공범”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비행중(time in flight)의 개념은 “탑승 후 외부의 문이 닫힌 순간부터 下機를 위해 외부의 문이 열리는 순간까지”로 하며 “강제착륙의 경우에는 관계당국이 항공기와 機上의 인원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⁵⁹⁾

상기와 같이 항공기테러범죄의 개념 및 구성요건을 제한함으로써 인하여 현행의 Montreal협약상의 사보타지 범죄에서 배제되고 있는 범죄 유형은 i) 비행중에 있는 항공기의 안전에 危害를 줄 수 있는 탑승자에 대한 폭력행위,⁶⁰⁾ ii) 비행중에 있는 항공기의 안전에 危害를 줄 수 있는 허위정보 교신행위,⁶¹⁾ 운항중(time in service)⁶²⁾에 있는 항공기의 비행불능 또는 비행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파괴 또는 손상 가능한 장치나 물질을 機上에 설치하는 행위⁶³⁾ 등이며, 1989년 2월 24일 채택된 Montreal 의정서⁶⁴⁾ 제1조 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근무자에 대한 살인 또는 중상해 행위, 공항에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공항시설 파손 또는

58) Hague협약 제3조 3항과 Montreal협약 제4조 2항에서는 국내 및 국제민간항공기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9) 여기의 「비행중」의 개념은 Hague협약 제3조 1항 및 Montreal협약 제2조 (a)항과 동일하며, Montreal협약 제2조 (b)항의 「운항중」의 개념보다는 좁다.

60) 동조 (a)항 참조.

61) 동조 (e)항 참조.

62) Montreal협약 제2조 (b)항의 「운항중」의 개념은 “일정 비행을 위해 지상요원 또는 승무원에 의해 항공기의 비행준비가 시작된 때로부터 비행완료로 인한 착륙후 24시간까지”를 말한다.

63) 동조 (c)항 참조.

64) 同 의정서의 정식 명칭은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이다.

공항업무 방해행위 등도 배제되고 있다.

나. 반인도범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는 방안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 함은 ICC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을 인지하고서 행하여진 동조 각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위들을 말한다. 한편 항공기테러 범죄도 민간항공기 및 민간승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무고한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인질과정중에 극심한 공포 및 불안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반인도적인 테러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항공기테러 범죄를 ICC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같이 항공기테러범죄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범죄유형은, i) 비행중인 항공기를 납치 또는 점거하는 행위, ii) 비행중인 항공기를 파괴 또는 손상하여 비행안전에 危害를 주는 행위 등 두가지 유형의 항공기테러범죄에 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ICC규정 제7조 각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들의 유형이 매우 개괄적인 개념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며 둘째는, 상기 두가지 유형의 테러범죄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한 반면 그 밖의 범죄들, 예를 들면 항공관련 시설 파괴 또는 공항업무 방해 행위 등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는, 항공기테러행위 중에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승객 살상이나 인질 행위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가 착륙하려는 순간 항공관련 주요 시설물들을 폭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폭파하는 행위 등은 상기의 두가지 유형의 항공기테러범죄에 포괄적으로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 소결

상기의 두가지 입법론 가운데 후자, 즉 항공기테러범죄를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의 하나로서 추가하는 방안이 규정개정 절차상 보다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전자와 같이 항공기테러범죄를 별도의 핵심 관할

대상범죄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항공기테러범죄를 기존의 핵심범죄와 같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해야 하고 그 범죄구성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함에 있어서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ICC규정 개정은 그 만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후자와 같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한 유형에 항공기테러범죄를 추가하는 방안은 먼저, ICC규정초안에서 검토하였던 「조약상의 범죄」들 가운데 1949년 Geneva 諸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행 ICC규정상의 전쟁범죄의 핵심범죄유형으로 반영되어 있고,⁶⁵⁾ 또한 1973년 Apartheid협약상의 범죄는 현행 ICC규정상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한 유형으로 반영되어 있는 등⁶⁶⁾ 국제범죄로서의 성격이 강한 조약상의 범죄들은 이미 현행 ICC규정에 반영되어 있는데 반해 항공기테러범죄는 ICC규정 초안 부속서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조약상의 범죄」들 가운데 조문체계상 Apartheid범죄보다 앞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⁶⁷⁾ 현행 ICC규정에서는 항공기테러범죄 자체가 관할대상 범죄에서 배제되어 있는 만큼, 항공기테러범죄의 중대한 국제적 범죄성을 재인식하여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는 후자의 입법안이 개정절차면에 있어서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1998년 7월 17일, 세계 120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근거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65) ICC규정 제8조(전쟁범죄) 2항 (a)에서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동항 (c)에서는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는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협약에 공동된 제3조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66) ICC규정 제7조(인도에 반하는 죄) 2항 (j)에 “The crime of apartheid”가 명시되어 있다.

67) ICC 규정초안 부속서에서 명기하고 있는 「조약상의 범죄」는 제1항에서 1949년 Geneva협약상의 중대한 위반행위, 제2항에서 1970년 Hague협약상의 항공기 불법납치행위, 제3항에서 1971년 Montreal협약상의 항공기폭파행위, 제4항에서 1973년 Apartheid협약상의 범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통해 앞으로 인류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자 개개인들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연대기구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조기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⁶⁸⁾ 그 결과 Bosnia and Herzegovina를 포함한 10개국이 2002년 4월 11일 일시에 이를 비준하여 당일 현재 66개국이 비준국이 됨으로써 ICC규정 제126조 1항에 따라 2002년 7월 1일을 기하여 동규정의 발효 및 이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국제법위원회(ILC)에서는 UN총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의 가능성을 검토해 오면서 1993년에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초안을 완성하여 1994년 UN총회 제46차 회기에 제출한 바 있으며, 동초안 제20조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현행 ICC규정상의 4가지 핵심범죄 이외에 「조약상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고 同초안 부속서에서는 이러한 조약상의 범죄의 하나로 항공기테러범죄를 명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행 ICC규정 제5조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 범죄로 4가지의 핵심범죄 유형만 규정하고 「조약상의 범죄」는 배제하였으며, 이러한 조약상의 범죄 중 일부는 4가지 핵심범죄들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항공기테러범죄는 결국 이러한 핵심범죄들의 한 유형으로서도 채택되지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지난해 9·11 항공기테러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조되고 있는 항공기테러범죄의 중대한 국제적 범죄성을 재규명하고 7월 1일부로 창설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항공기테러법을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항공기테러범죄를 사전 억제하고 사후적으로 그 처벌에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ICC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론을 고찰하였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범죄의 개념에 대한 국제법상 유권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연구의 편의를 위해 이를 광의, 협의, 최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항공기테러범죄의 국제범죄성 여부를 고찰하였는 바, 대다수 국가들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아직까지 항공기테러범죄를 국제범죄로 선언하는 것

68)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국제연대기구’에서는 ICC로마규정 채택 4주년이 되는 2002년 7월 17일까지 60개국 비준 및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목표로 지금까지 활동하여 왔다(http://www.amnesty.or.kr/campaign/010708_etc.html 참조).

을 반대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까지는 다수였으나 지난해 9·11항공기테러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는 항공기테러범죄 자체의 엄청난 파괴성, 무고성, 잔혹성 등으로부터 국제범죄로서의 보편적 성질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점차 성숙되고 있는 바, 앞으로 항공기 테러범죄에 관한 국제적인 새로운 입법론에 있어서는 항공기테러범죄의 법적 성격을 적어도 협의의 국제범죄라고 보는 법적 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ICC규정이 정식 발효된 후 7년이 경과하면 同규정 제121조에 의하여 ICC규정에 관한 개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향후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항공기테러범죄인을 소추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론적 고찰을 하였다. 첫째는 현행 ICC규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4개의 핵심범죄 이외에 항공기테러범죄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신설하는 방안과, 둘째는 현행 ICC규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하는 죄」의 한 유형으로 항공기테러범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였는 바, 앞으로도 항공기테러범죄와 관련한 각국의 입장은 여전히 상충될 수 있고 ICC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과정을 고려할 때 현행 ICC규정상의 인도에 반하는 죄의 한 유형으로 항공기테러범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훨씬 규정개정이 용이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도 항공기테러범죄에 관한 사전적, 사후적 법적 규제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입법론으로 둘째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만호, “항공범죄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김영석,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현황: 로마회의 이후를 중심으로,” 인도법 논총 제21호 (대한적십자사, 2001)
- 유형석,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전쟁범죄,”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2001.10)
- 이한기, 新稿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2)
- 정용태·류재형 共著, 국제법학 (대왕사, 1997)
- 제성호, “항공기테러의 법적 규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최태현, “국제인도법 위반범 처벌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확립: ICC규정을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제19호 (대한적십자사, 1999)
- 太壽堂鼎, “國際犯罪の概念と 國際法の立場,” ヅュリスト, No.720 (1980)
- Jessup, P.C., A Modern Law of Nations - An Introduction (N.Y.: Macmillan Company, 1952)
- Aggarwala, Narinder, “Political Aspects of Hijacking,” International Conciliation, No.585 (1971.11)
- Arsanjani, Mahnoush H.,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9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2 (1999)
- Bassiouni, M. Cherif and Blakesly, Christopher L.,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the New International World Order,”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25, No.2 (1992)
- Chaturvedi, S.C., “Hijacking and the Law,”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1 (1971)
- Horlick, Gary N., “The Developing Law of Air Hijacking,”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12 (1971)
- Joyner, Nancy Douglas, Aerial Hijacking as an International Crime (D o b b s

Ferry, N.Y.: Oceana Publications, Inc., 1974)

ILC Draft Statute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4, No.2 (1994.12)

SC Res. 827 (1993), 25 May 1993, 32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203 (1993)

SC Res. 955 (1994), 8 Nov. 1994, 33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598 (1994)

UN Doc. A/7656, 6 Oct. 1969

Yearbook of ILC, Vol.2 (1980)